

의안번호	2200680
의 퇴 인	이병진 의원
회 답 일	2024. 6. 26.
추 계 번호	24B10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02억 7,600만원(연평균 60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수질오염방 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 원(안 제35조제7항 신설)	3,600	3,672	3,744	9,540	9,720	30,276	6,055
국비(50%)	2,000	2,040	2,080	5,300	5,400	16,820	3,364
지방비(40%)	1,600	1,632	1,664	4,240	4,320	13,456	2,691

주 1. 유사 사업의 사례에 따라 자부담 10% 가정

2. 방지시설 개소수 및 지원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방지시설 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7항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7항 신설	○	환경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35조제7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이를 위해 환경부의 유사사업인 「대기환경보전법」¹⁾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지원 사업과 경기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례의 지원 대상 및 국고 지원비율, 환경부 연구용역의 설치 단가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참고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2026~2029년)을 계획중²⁾이며,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2010년도부터 수행중임
- ※ [참고자료1] 환경부의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2026~2029년) 개요
- ※ [참고자료2] 경기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례

1)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2027년 본사업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중소기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안 제35조제7항 신설)
 - 비용추계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비용을 방지시설 개소수에 설치 단가와 지원율을 곱하여 추계
 - (방지시설 개소수) 전국의 폐수배출사업장 55,744개소(2022년 기준) 중 4·5종 규모의 영세사업장이 53,537개소⁴⁾로 96%를 차지하고 있음.⁵⁾ 환경부의 유사사업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지원 사업’⁶⁾과 경기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4·5종 영세사업장 중에 방지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함
 - － 환경부에서는 2026~2027년에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후, 2028년부터 본사업을 계획중이므로⁷⁾ 대상 개소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
 - 2025~2027년 매년 20개소⁸⁾
 - 2028~2029년 매년 50개소⁹⁾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3년 10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 4) 4종 2,598개소, 5종 50,939개소
- 5) 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국립환경과학원) 결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투자 여력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 문제가 발생함. 또한 재정 및 환경투자 능력 저하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 6) (지원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제1항제7호
 (지원 대상) 전국의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인접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등
 (지원 예산) 2019~2023년 5년간 총 1.35조원 투입(국비 7,500억원, 1만4,000개소)
 (지원 비율)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7) 시범사업의 착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8) 경기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례의 연도별 지원 현황
 - － 2020년: 20개소, 2021년 28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12개소
- 9) 환경부의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참고

- (설치 단가) 환경부의 '산업폐수관리 정책 선진화(2022년)' 연구용역의 방지시설 설치 단가 평균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5년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설치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2] 제5종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련 자료

(단위: 백만원)

업종별	개소수	폐수처리 용량(m³/일)	설치 단가
운수장비 세차·세척시설	18,867	50	134
금속가공시설	6,681	50	134
식료품제조시설	3,803	50	358
비금속광물제조시설	3,229	50	134
화학물질 및 제품제조시설	2,945	50	358
합 계	35,525	—	223(평균)

자료: 환경부의 '산업폐수관리 정책 선진화(2022년)' 연구용역에서 발췌

- (지원율) 환경부의 유사사업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비율을 참고하여 국비:지방비:자부담(사업장) 비율을 5:4:1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02억 7,600만원(연평균 60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방지시설 설치사업자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방지시설 개소수(A, 개소)	20	20	20	50	50	160	—
지원 단가(B, 백만원/개소)	200	204	208	212	216	—	—
소 계 (C=A×B, 백만원)	4,000	4,080	4,160	10,600	10,800	33,640	6,728
국비(50%)	2,000	2,040	2,080	5,300	5,400	16,820	3,364
지방비(40%)	1,600	1,632	1,664	4,240	4,320	13,456	2,691
추가재정소요	3,600	3,672	3,744	9,540	9,720	30,276	6,055

주 1. 유사 사업의 사례에 따라 자부담 10% 가정

2. 방지시설 개소수 및 지원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전국의 폐수배출사업장 중 4·5종 규모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개소수 및 지원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환경부의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 자료¹⁰⁾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재정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 폐수배출 사업장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일부를 지원으로 환경투자 부담 완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2026년~ (계속)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50%)
 - ※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조율은 없으나, 유사사업*의 보조수준을 고려하여 설정
 -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지원 사업 50%
- (시행주체) 환경부(유역·지방청), 자치단체
- (지원근거 및 특이사항*) 해당없음
 - *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국비지원 건의('22.4. 경기도, '22.5. 경상남도)

□ 사업의 필요성

- 전체 폐수배출사업장(56천개소)의 96%를 차지하는 소규모(4·5종) 영세 사업장의 경우 투자 여력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폐수 적정 관리 문제로 공공수역의 수질 문제 발생
 - － 재정 및 환경투자 능력 저하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및 운영 한계
 - －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및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이상 현상 발생시 수질 오염 원인 제공 사업장 확인 및 대응 한계
- 중소기업에 수질오염방지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으로 적정 운영 유도·실질적인 DB 관리와 수질사고 사전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보전 필요

10) 환경부 제출자료

□ 산출근거

- (시범사업) 낙동강 수계¹¹⁾ 4·5종 폐수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진
 - (사업기간, 사업비) '26~'27년, 80억원(국고 40억원)
 - (사업형태) 보조사업(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본사업) 전국 4·5종 폐수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진
 - (사업기간, 사업비) '28~'29, 200억원(국고 100억원)
 - (사업형태) 보조사업(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근거: (운수장비 세척·세척시설, 식료품제조시설 등의 방지시설) 1개소 × 200백만원/개소 × 0.5(국고 보조율) = 1억원/개소

11) 부산, 창원, 김해 하구 등에 취수원이 집중되어 있어 시범사업은 낙동강 수계로 추진중

[참고자료 2] 경기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례¹²⁾

□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피혁 등 북부 주력산업의 환경시설(수질) 설치 및 개선 지원, 북부지역 수질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
- 근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24년 사업비 : 1,017백만원(도비 328, 시·군비 384, 자부담 305)
 - * 보조비율 : 지방비 70%(도 46%, 시·군 54%, 최대 70백만원), 자부담 30%
- 사업대상 : 경기도 북부지역(한탄강 수계 등) 10개소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효과

-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금액(백만원)			사업내용(개소)				
	계	도	시·군	계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술지원	ISO14001 인증지원	폐열재이용 시설 등
계	13,889	4,936	8,953	1,571	424	1,084	41	22
2010~2019	11,130	3,724	7,406	1,491	344	1,084	41	22
2020	531	228	303	20	20	—	—	—
2021	763	328	435	28	28			
2022	750	328	422	20	20			
2023	715	328	387	12	12			

- 2023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평균 87.08% 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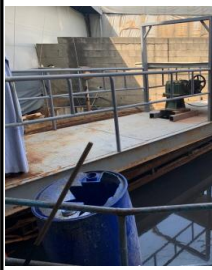
구 분	수질 농도(mg/L)				
	BOD	TOC	SS	T-N	T-P
지원 전	317.08	115.96	108.48	31.23	4.15
지원 후	14.55	18.02	8.89	5.00	0.84
개선효율(%)	95.41	84.46	91.80	83.99	79.72
저감효과	87.08%				

주. 2019년 71% ⇒ 2020년 86.5% ⇒ 2021년 85.8% ⇒ 2022년 83.6% ⇒ 2023년 87.08%

12) 경기도 제출자료

□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례

엘림섬유(2021년)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62			업종	섬유임가공업		
지원사항	시설명	폐수처리시설		지원금액 (천원)	총액	지원금	자부담
					43,000	30,000	13,000
	개선사항	폐수처리시설의 모래 및 활성탄 여과기 추가 설치, 방류수 처리효율 향상					
	오염도 측정결과	측정항목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BOD	176.8	15.1	91.5		
		COD	63.2	27.6	56.3		
TN		16.320	3.287	79.9			
	SS	24.5	1.7	93.1			

개선 전		개선 후	
			

(주)삼부(2020년)							
소재지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956번길 55		업종	섬유가공업			
지원사항	시설명	폐수처리시설		지원금액 (천원)	총액	지원금	자부담
					78,300	30,000	48,300
	개선사항	폐수처리장 (1차)생물학적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2차)물리·화학적처리 시설 증설 공사 지원					
	오염도 측정결과	측정항목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COD	1261.5	5.0	99.6		
		TN	55.4	5.983	89.2		
		TP	36.0	0.075	99.8		
SS		4140.0	2.0	100.0			

개선 전		개선 후	
			